

#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21 .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12 . 29 .

다. 상정일자 : 1998. 12. 29 .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 2. 제 안 이 유

- 평창군포상조례중 평창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공무원상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 등이 중첩되어 있고, 조례의 제정목적 등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평창군 향토 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삭제하려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가.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삭제

나. 공적심사위원 구성을 부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종합 민원실장, 환경복지과장, 임업경영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

## 4. 검 토 의 견

가. 평창군포상조례 제4조에 의한 평창군 포상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향토일꾼상이 있으며 모범공무원 포상은 평창군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토주인상과 향토일꾼상은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범공무원 포상과 중복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포상실적 저조할 실정임.

- 나. 따라서 평창군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포상을 포상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다. 기타 자구 및 관련법상 저촉사항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